

의안번호	제770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상위법령인 「관광진흥법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관련 조문 정비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도지사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선발) ① <u>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 관광 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선발) ① 도지사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<u>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관광진흥법

제48조의6(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(開設)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8(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,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장 장 인 수